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대한화장품협회 성지영

CONTENTS

I. 용어 정의 및 법령 체계

II.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 및 표시 방법

III.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용어 정의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화장비누·흑채·제모약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용어 정의

기능성화장품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천연화장품

-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본 지표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용어 정의

사용기한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

표시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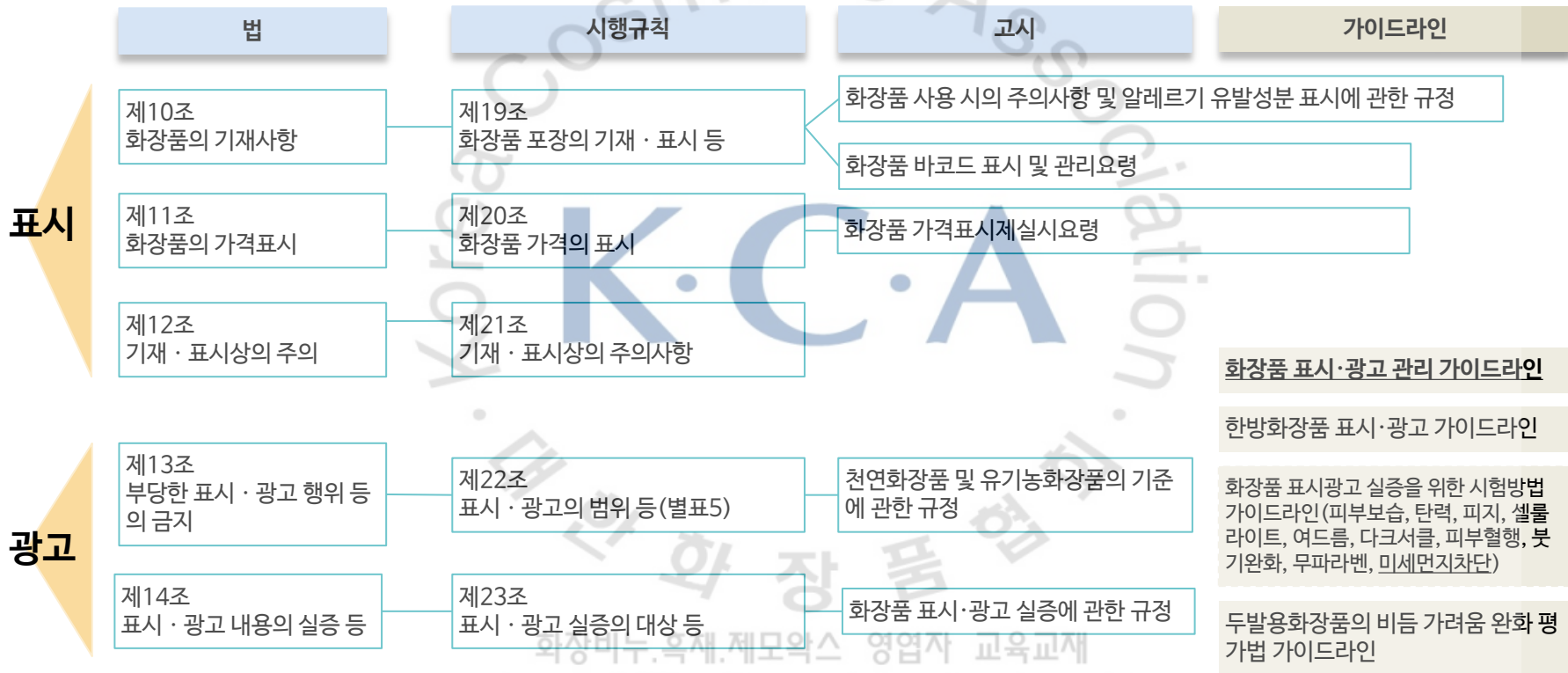
광고

-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화장비누·흑채·제모약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법령 체계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

1차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 포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표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8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

1차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 포함)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의 기재 표시 예외

1. 내용량이 10밀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

☞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표기)만 표시 가능**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가격 → ‘견본품’, ‘비매품’ 등 표시

2. 내용량이 10밀리터 초과 50밀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경우 생략 가능**

※ **전성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전성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대신 표시하거나 매장내 안내책자 비치**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단서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의 기재 표시 예외

QA?

1. 화장품법에는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비닐 랩을 씌우고 단상자(종이상자)에 넣는 방식으로 포장하는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화장비누는 기존 공산품에서 통용하던 표시 방법을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며, 스티커, 브로슈어, 첨부문서(인서트 페이퍼) 등 다양한 방법의 표시기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2. 매장에서 화장비누를 별도의 포장 없이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시기재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포장 없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화장비누의 경우 소비자에게 화장품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기재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스티커, 브로슈어, 첨부문서(인서트 페이퍼) 등 다양한 방법의 표시기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재 표시 상의 주의사항

-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
- ✓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기재표시
- ✓ 한자 또는 외국어 병기가능
- ✓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기재가능

화장비누·흑채·제모약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 브랜드 명칭 및 서브 브랜드 명칭을 포함하여 제품명으로 본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상호 및 주소

- 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 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나.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각각 하지 않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제조에 사용된 성분(1)

10ml(g) 이하 포장, 견본/테스터/비매품	10ml(g) 초과 50ml(g) 이하 포장	50ml(g) 초과 포장
전성분 기재·표시 생략 가능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기재·표시 ※ 그 외의 성분 생략 가능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기재·표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및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제외

※ 전성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전성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대신 표시하거나 매장내 안내책자 비치**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제조에 사용된 성분(2)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마. **착향제는 " 향료 " 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바.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 제조에 사용된 성분(3)

2020년 1월 1일 이후 표시 의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29호]

- | | |
|---------------------------------|----------------------------------|
|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 14.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
|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 15. 파네솔 (CAS No 4602-84-0) |
|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 16.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
| 4. 시트랄 (CAS No 5392-40-5) | 17. 리날롤 (CAS No 78-70-6) |
| 5. 유제놀 (CAS No 97-53-0) | 18.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
|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 19.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
|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 20. 핵실신남알 (CAS No 101-86-0) |
|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 21. 리모넨 (CAS No 5989-27-5) |
|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 22.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
| 10. 신남알 (CAS No 104-55-2) | 23.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
| 11. 쿠마린 (CAS No 91-64-5) | 24.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
|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 25.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
| 13.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 |

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피부, 모발 등에 적용 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제품(예, 샴푸, 린스 등)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표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ml, mL 또는 g으로 표시)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경우, 수분을 포함한 중량 및 건조중량을 모두 표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의 내용량 기준: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
(다만, 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제조번호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2019년 3월 14일 제조품이 24개월 기한인 경우 → 2021년 3월 13일까지 혹은 2021년 2월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기능성화장품의기재·표시(1)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기능성화장품의기재·표시(2)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을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한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예시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가격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구분	내용
표시대상	·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
표시의무자	· 소매업자/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자
가격표시	·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
표시방법	· 개별 제품에 스티커 또는 꼬리표 부착, 종합제품은 일괄 표시 ·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원』 · <u>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로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 화장품 개별 제품에는 판매가격을 표시 생략</u>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참조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사용 시의 주의사항

공통사항 + 개별사항 + 성분별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주의사항 + (자체 운영사항)

가. 공통사항

-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나. 개별사항

- 1)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러브세안제
- 2) 팩
- 3)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품 제품류
- 4) 모발용 샴푸
- 5)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 6) 외음부 세정제
- 7)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
- 8) 체취 방지용 제품
- 9)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무스의 경우 가)부터 라)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 10)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11) 알파-하이드록시메시드(α -hydroxyacid, AHA) (이하 "AHA"라 한다) 함유제품
(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 12)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 13) 탈염·탈색제
- 14)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함)
- 15)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그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제④항 제1~8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 나.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외한다)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19조제4항제8호는 화장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에 관한 것으로,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바코드

구분	내용
표시대상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포함)
표시의무자	국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바코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N/UCC-13 • EAN/UCC-14 • EAN/UCC-128 • UPC BAR CODE
바코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품목별·포장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바코드 심벌 표시 • [별표 3]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단, 용기포장의 디자인에 따라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코드의 인쇄크기와 색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화장품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구분	EAN/UCC13	EAN/UCC14	AI와 EAN/UCC-128	UPC
인쇄크기	- 3.73cm×2.63cm - 0.3배~2.0배	- 15.98cm×3.18cm - 0.625배~1.2배	-가로: 데이터량에 따라 유동적임 -세로: 20mm~38.2mm	- 3.73cm×2.59cm - 0.3배~2.0배
인쇄색상	- 락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락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락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락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인쇄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이상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이상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참조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_기타사항

분리배출 표시

내용물의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이하인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 생략가능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문구

본 제품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고객상담팀 전화번호

예) 고객만족팀 전화: 000
고객상담팀 전화: 000
소비자상담 전화: 000

소비자기본법

원산지

수출, 수입, 면세점 입점 제품의 경우 원산지를 기재해야함

화장비누, 흑채, 제도, 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대외무역법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가. 신문·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팸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간판·네온사인
·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음반·서적·
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ETC.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만 각각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할 수 있다.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① 용어의 정의, ② 사용할 수 있는 원료, ③ 제조공정, ④ 작업장 및 제조설비, ⑤ 포장, ⑥ 보관, ⑦ 원료조성, ⑧ 자료의 보존

* 용어 :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 유기농유래 원료, 식물유래, 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유래 원료, 천연 원료, 천연유래 원료

* 원료조성

- 천연화장품 : 규정의 [별표 7]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유기농화장품 : 규정의 [별표 7]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 인증기관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제1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제2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제3호: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www.controlunion.co.kr)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 표시방법 〉

-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비율로 조정한다.
-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1)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2)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1)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질병 진단·치료·경감· 처치·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항진균·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 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여드름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항균	단, [별표 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한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2)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피부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선, 탄살 . 기저귀 발진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메이크업을 통해 홍조, 홍반을 가려준다는 제외) .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는 제외) . 뾰루지를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노화 . 셀룰라이트 . 붓기·다크서클 . 피부구성 물질(예: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3)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모발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모 .탈모방지, 양모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제모에 사용한다.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생리활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순환 .피부재생, 세포 재생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보호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땀 발생을 억제한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p>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p> <p>***</p>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4)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신체개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어트, 체중감량 .피하지방 분해 .얼굴 윤곽개선, V라인 .체형변화 .몸매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p style="text-align: center;">***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p>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5)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기능성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관련 표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원료 관련 설명 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 	
유기농화장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6)

다.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구분	금지표현	비고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00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00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00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00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00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화장비누·혹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7)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줄기세포 관련 표현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
그 밖의 기타 표현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관련 표현 제외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8)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내 노폐물 제거(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필러(filler),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_세부(9)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분	금지표현	비고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희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_실증 대상(1)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 대상

구분	실증 대상	비고
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른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 붓기 완화 · 다크서클 완화 · 피부 혈행 개선 	·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 	·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_실증 대상(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

[별표 2]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 대상

구분	실증 대상	비고
2.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 * 금지표현(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외한 경우에 한함	.시험분석자료로 입증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 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
	.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_실증자료 요청 및 검토 절차

요청 접수

- 지방청/지자체 업무요청
- 식약처 본부(모니터링)
- 실증관련 민원(신문고 등)



- 미제출** → 자료 미제출 상태로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
- 제출기한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출기간 연장가능
- 자료제출(15일 이내)** → 화장품심사과에 이첩, 자료의 적정성 검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_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1)

실증자료

-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험결과

- 인체 적용시험자료, 인체 외시험자료,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예시)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해당 표시 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

조사결과

- (예시)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등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_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2)

시험 결과의 요건

■ 공통사항

- 가.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나.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
(예시) 대학병원 피부과, oo대학교 부설 화장품 연구소, 인체시험 전문기관 등
- 다.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이어야 한다.
- 라.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보증 업무를 수행한 자료이어야 한다.
- 마.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조사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 나. 기초자료의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 라.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조사자는 조사목적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_표시

위반내용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1)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아 2)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아 3)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10조, 이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차)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12조, 이 규칙 제21조에 따 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방법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_표시·광고

위반내용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카 1) 별표5 제2호 가목·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의약품 오인, 기능성/천연/유기농 오인, 타 제품 비방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광고위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9개월 (광고위반)	
카 2) 별표5 제2호 다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광고위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4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 (광고위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광고위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12개월 (광고위반)
타) 법 제14조 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파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화장품 광고의 자율규제

방송 광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사전심의

- 방송광고 사전심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8. 6)

지상파TV : 한국방송협회에서 심의 수행(현재)

케이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심의 수행(현재)

인쇄 광고, 인터넷 광고

협회 내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 발족(1983.10)

-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심의단체로 신고

- 자율적인 광고자문 운영(월 2회)

- 위원구성: 광고자율심의기구, 소비자단체, 학계, 법률전문가, 업계등

○ 광고 사전심의 및 자율자문 활성화

- ✓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자문을 받지 않은 화장품 위주로 집중점검
- ✓ 심의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 관련 화장품 감시 면제
- ✓ 필요 시 자문 여부 및 내용 등을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광고자문” 게시판 이용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화장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증명서 발급

성분사전

광고자문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영업자 교육교재

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